

효경상조(주)(이하 '회사' 라 칭함)와 부금계약자(이하 '회원' 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은 상호서비스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효경상조(주)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상호부금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호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의 가입]

- 회사로부터 상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또는 자동이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에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 증서를 교부합니다.
- 회원이 회원 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 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재발급 수수료로 5,000원을 받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구 회원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 법인, 기타단체의 명의로 10건 이상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 제2조를 준용하며 단체회원 가입 등록 이후에는 동일단체 또는 법인의 개별 가입 시에도 단체회원으로 인정합니다.
- 단체의 구성원 중 상호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구좌 수에 따른 상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합니다.
- 단체회원은 명의변경 수수료 비용을 면제합니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자동이체)한 날, 또는 전자거래 및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 및 회원 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출서류 : 철회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회원보관용), 거래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제1항과 ②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 의무]

-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 납입금액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입 상품에 따른, 월납입금액, 납입회수(기간), 제공행사 및 납입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명	월납입금액	납 입 회 수	납 입 종 별	납 입 일
신(信)상품/280만원	20,000원	140회	월납	계약시
호(孝)상품/390만원	30,000원	130회	6개월납	자동이체
예(禮)상품/480만원	40,000원	120회	년납	(CMS)
			일시납	지정일

-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6개월분 이상을 선납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월납입금액의 2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선납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 상호서비스제공 시는 선납에 의한 할인금액을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입상품계약금액의 3%를 추가 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 [행사시 잔여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호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9조 [주소 변경 통보 의무]

- 회원의 주소, 연락처 및 E-mail주소변경 시에는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주소, 연락처 및 E-mail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보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제10조 [상호서비스의 이용]

- 회원 본인이나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상호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호서비스 이용자를 상기 ①항 이외의자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명의 변경을 통하여 이용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높은 상품금액의 상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호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합니다.

제11조 [단체계약과 상호서비스]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상호서비스의 제공 지역]

- 회사가 제공하는 상호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호서비스의 제공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 :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 외부업체 출입이 제한된 특정 장소는 역무 행사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및 기타 교통 체증 등 불가항력으로 행사가 신속한 대응을 못할 사정 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장례를 제외한 기타 행사 : 회사가 지정하는 협력 장소(예식장, 공공장소, 야외 예식장, 뷔페, 이벤트 홀 ,호텔, 교회, 성당, 기타 협력업체 / 외부업체 출입이 제한된' 특정 장소는 행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시외 출장 경우 출장 제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 까지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시 제4조 ①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상호서비스의 내용]

- 상호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된 내용대로 제공합니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질 등으로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호서비스의 내용은 제19조[상호서비스의 제공내용표시]에 따릅니다.

제14조 [회원의 채무 불이행 효과]

-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20%를 초과할 수 없다.
-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 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회원이 상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용을 공제한 아래 해약환급금포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 하여 드립니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호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 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호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표인 2011년 9월1일시행]

납입회차별 해약환급금						
상 품	월부금	만기회차	10회	11회	12회	회차마다
280만원	2만원	140회			12,000	18,500원씩 증가
390만원	3만원	130회		12,750		27,750원씩 증가
480만원	4만원	120회	10,000			37,000원씩 증가

*산출된 해약환급금의 1,000원 단위는 절삭한다.

-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또는 특별할인, 법인단체 특약상품의 특례에 의한 할인 받았을 경우 납입금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어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 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 제14조 ①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①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해약신청서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호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 지위양도 및 명의변경]

- 회원은 상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에 대하여 5,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 회원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양식은 회사 비치)

양 도 인	회원명의변경 신청서,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 납입영수증
양 수 인	CMS출금이체 신청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

제17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기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제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 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문의 및 상담]

이 계약에 대한 문의 또는 상담은 다음 장소에서 합니다.
효경상조(주) 상담실 - 주(아)대표전화 : 1577-7808

* 본 약관은 201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